

의안번호	제 122 호
의 결 연 월 일	2015년 1월 일 (제337회)

충청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 조례안

발 의 자	박우양 의원 등 7명
발의연월일	2015년 1월 19일

# 충청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 조례안

(박우양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2
----------	-----

발의연월일 : 2015년 1월 19일

발 의 자 : 박우양·이양섭·김학철·김인수·

이의영·황규철·김봉희 의원(7명)

## 1. 제안 이유

- 전통주 산업은 농업의 부가가치 증진은 물론 도내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요처로서 이의 육성과 지역 전통주 육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랑 정신을 고취코자 하는데 있음

## 2. 주요 내용

- 도지사는 지역전통주 산업육성과 소비촉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지역 전통주 활성화에 노력(안 제3조)
- 제조업자는 지역전통주 품질향상 및 소비촉진을 위한 도정시책에 적극 참여·협력(안 제4조)
- 도민은 지역 전통주를 이용한 건전하고 품위있는 술 문화 정착 노력(안 제5조)과 도지사는 공식행사에서의 지역 전통주 우선 이용 노력(안 제6조)
- 도지사는 지역 우수 전통주 홍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안 제7조)

## 3. 조례안 : 붙임

## 4. 관계법령 발췌 : 붙임

##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6. 관련부서 협의 : 농정국 원예유통식품과와 협의

## 7. 입법예고사항 :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함

## 충청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과 이를 이용한 건전하고 품위있는 술 문화 정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전통주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랑 정신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술”이란 「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알코올분(分)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 6도 미만의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지역전통주”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술로서 충청북도내에 주된 사업소를 두고 생산·제조되는 술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전통주 산업육성은 물론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랑 정신의 고취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역전통주를 이용한 건전하고 품위 있는 술 문화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제조업자의 협력) 제조업자는 지역 전통주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등 지역전통주 소비촉진을 위한 도정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도민의 협력) 충청북도민은 지역전통주를 이용한 건전하고 품위 있는 술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식행사에서의 지역전통주 우선 이용) 도지사는 도가 주최·주관 하는 각종 공식행사에서 지역전통주를 우선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 우수전통주 홍보) 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지역 우수전통주를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지역 우수전통주를 홍보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 주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주정(酒精)[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粗酒精)을 포함한다.]

나.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鎔解)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 것과 국세청장이 제5조의2에 따른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류가 아닌 것으로 결정한 것은 제외한다.]

1의2. “전통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말한다.

가. 「문화재보호법」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시·도지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나.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 중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은 주류

###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술“이란 「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알코올분(分)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 6도 미만의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전통주“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술을 말한다.

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중요무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 보유자가 「주세법」 제6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나.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식품명인이 「주세법」 제6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로서 제8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아 「주세법」 제6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이하 “지역특산주“라 한다)

3. “전통주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술을 말한다.

가. 전통주

나.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한 술